공교육기관에서의 종교활동의 가능성과 한계

송기창(숙명여대 교수, 교육학)

Ⅰ. 서언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선교에 대해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간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남기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19~20)는 말씀이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딤후 4:2)는 말씀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선교에 대한 부담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비록 현재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며 산다고 해도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막상 선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보면, 공교육이라는 제도의 틀 속에서 선교가 어디까지 가능하고 어디까지 불가능한 것인지 갈등 상황에 부딪치게 된다. 기독교가 국교처럼 되어 있는 미국에서도 공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기독교도 교원들이 선교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가지지 못함으로써 합법적인 선교활동에 관해서도 떳떳하지 못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비기독교도들의 비판과 항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 지레 겁먹고 공교육에서 선교활동은 으레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 선교에 대한 시도조차 못하는 교원들도 많이 있다. 더 큰 문제는 법적 한계 속에서 선교활동의 범위가 결정된다기보다는 학교장이나 교감이 기독교인인가, 비기독교인인가에 따라서 그 범위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비기독교도 교원들 역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종교 활동의 한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합법적인 종교활동을 비판하기도 하며, 비기독교인 교장들은 합법적인 종교활동까지도 금기시 하는 경우가 많다. 기독교정신으로 설립된 기독교 학교에서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법규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공교육[1]에서의 종교활동의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학생의 교육과정 선택권이 확대·부여되는 제7차 교육과정 하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통한 종교교육은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인지, 학생에게 학교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은 평준화 체제 하에서 사립 기독교 학교들이 할 수 있는 종교교육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공교육기관에서 특별활동을 통해 선교활동은 불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교원에 대한 선교 수단으로 학교에서 신우회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

1) 미국에서는 공립학교 교육을 공교육으로, 사립학교 교육을 사교육으로 규정하나, 우리의 경우에는 공립이건 사립이건 정규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공교육으로, 개인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학원 수강, 개인과외 등을 사교육으로 규정해 왔다. 이러한 구분이 국제표준에 맞지 않아 교육지표를 국제비교할 때 혼란스럽다고 하여 미국 방식으로 바꾸자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아직도 사립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까지 공교육 속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글에서도 정규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모두 공교육으로 규정하고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Ⅱ. 종교교육 관련 법규정 및 판례

1. 종교교육 관련 법규정

우리 헌법은 제11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20조에서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밝히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6조 교육의 중립성에서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의 전파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기본법 규정만으로 보면 사립학교에서는 종교교육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할 수도 있다.

즉, 교육기본법 제12조 제3항의 “학생은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에 따라 사립학교가 종교교육 관련 사항을 학칙에 명시할 경우 학생은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제8조 학교규칙에서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도·감독기관(국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공·사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사항 및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초·중등학교 학칙은 관할청의 인가사항임을 밝히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에는 학교규칙의 기재사항으로 수업 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대학의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6조에 학칙 관련규정이 나타나 있다.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학교규칙(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으며, 학칙은 인가사항이 아니며 보고사항으로 되어 있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에는 학칙 기재사항으로 수업연한·재학연한, 학기와 수업 일수 및 휴업일, 학위의 종류 및 수여, 교육 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적어도 법령상으로는 모든 사립학교는 학칙에 종교교육을 명시할 경우 종교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사립 초·중등학교의 학칙은 관할청의 인가사항인 반면, 사립대학의 학칙은 보고사항이라는 점,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는 점, 대학은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보장되고 있는 반면, 초·중등학교는 학교 선택권이 제한적으로 보장되거나 억제되고 있다는 점, 대학교육은 전문교육이지만 초·중등교육은 보통교육이고,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종교교육에 문제가 없지만, 사립 초·중등학교에서 명시적으로 종교교육을 실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교육기관의 종교교육관련 판례

사립 초·중등학교에서 종교교육과 관련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는 없었으나, 사립대학에서 종교교육을 문제삼아 제기된 소송이 2건 있었다.

하나는 신입생지원자격 제한조치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사건으로, 고신대학교 신입생 자격 중 의예과 및 간호학과 지원자를 기독교 교인 중 소위 '학습인' 이상으로 제한한 조치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그 시정, 변경을 명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시키지 아니하고, 또 학생정원의 감축, 학급·학과의 감축이나 폐지 또는 학생모집의 정지 등 제재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위헌이라는 주장이었다. 헌법재판소는 신입생자격제한으로 인하여 재학생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여지는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 "신입생자격 제한으로 인하여 재학생들이 자유로이 학문을 연구하고 발표하는 자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학문의 자유가 침해당했다고 볼 여지는 없다. 또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입생모집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건의하며 결정에 대하여 비판하는 범위 내에서 재학생들의 대학자치에의 참여권을 비록 인정한다 하더라도, 건의·비판을 통한 참여가능성 자체가 봉쇄되지 않은 이상 재학생의 건의내용과 다른 결정이 내려졌다 하여 바로 그들의 참여권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가사 청구인들의 청구가 인용되어 교육부장관의 부작위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판단되고 이로써 교육부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고신대학교의 신입생자격 제한조치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자신의 법적 지위가 그 전에 비하여 개선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청구인들에게는 교육부장관의 부작위가 위헌인지의 여부를 다툴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2)]

다음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교육부의 의견서를 판결문에 인용한 부분이다. 사립학교의 경우에 신학과 이외의 일반학과 신입생에 대하여 일정한 종교적 자격을 요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신입생에게 종교적 자격을 요구하는 것을 합리적 제한으로 보는 근거로 사립학교의 특수성, 대학의 자주성과 자율성, 학생의 선택에 의한 입학여부 결정 등 세 가지를 들고 있다.

> "평등권은 합리적 차별을 허용하는 상대적, 실질적 평등을 의미할 뿐인데, 특정 종교교육을 목적으로 한 사립학교의 설립도 가능하고 사립학교에서는 선교의 자유의 일환으로 종교교육 및 종교지도자 육성이 허용되므로, 종교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입생 선발시 일반적인 대학입학자격 외에 종교적 자격을 요구하는 것도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따른 합리적인 제한으로서 허용된다.
>
> 종교교육이라 함은 종교지도자 육성 이외에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한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넓은 의미의 종교교육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신학과 이외의 일반학과 신입생에 대해서도 일정한 종교적 자격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사립대학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에 필요한 자격을 자주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사립대학에 입학할 것인지 여부는 학생들의 선택에 맡겨져 있으므로 국·공립대학과는 달리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보아야 한다. 결국 고신대학교의 신입생자격제한조치는 대학의 자주성 내지 자율성에 기한 합헌적 조치로서 교육부장관이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다른 하나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했으나 6학기 동안 참석해야 하는 대학예배에 4학기만 참석하여 학사학위를 받지 못한 자가 제기한 소송으로[3)], 대법원은 학사학위

---

2) 94헌마277 신입생지원자격 제한조치 헌재공보 제21호(1997.3.27)

3) 1998.11.10, 96다37268 판결 학위수여이행 공98.12.15.[72], 2830

를 거부한 대학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한 원심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는 달리 종교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종교교육 내지는 종교선전을 할 수 있고, 학교는 인적·물적 시설을 포함한 교육시설로써 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본질로 하며, 특히 대학은 헌법상 자치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사립대학은 교육시설의 질서를 유지하고 재학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률상 금지된 것이 아니면 학사관리, 입학 및 졸업에 관한 사항이나 학교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을 학칙 등으로 제정할 수 있으며, 또한 구 교육법시행령 제55조는 학칙을 학교의 설립인가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하나로 규정하고, 제56조 제1항은 학칙에서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 '교과와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고사(또는 시험)와 과정수료에 관한 사항', '입학·편입학·퇴학·전학·휴학·수료·졸업과 상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립대학은 종교교육 내지 종교선전을 위하여 학생들의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의 종교교육을 받을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
>
> 기독교 재단이 설립한 사립대학이 학칙으로 대학예배의 6학기 참석을 졸업요건으로 정한 경우, 위 대학교의 대학예배는 목사에 의한 예배뿐만 아니라 강연이나 드라마 등 다양한 형식을 취하고 있고 학생들에 대하여도 예배시간의 참석만을 졸업의 요건으로 할 뿐 그 태도나 성과 등을 평가하지는 않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대학교의 예배는 복음 전도나 종교인 양성에 직접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에게 종교교육을 함으로써 진리·사랑에 기초한 보편적 교양인을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학예배에의 6학기 참석을 졸업요건으로 정한 위 대학교의 학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위헌무효의 학칙이 아니라고 본다.
>
> 대학의 자율성 및 학교교육의 성질에 관하여 규정한 헌법조항과 교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사립대학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을 당시 구 교육법시행령 제56조에서 학칙의 기재사항으로 규정한 교육과정이나 졸업·학위수여에 관한 사립대학의 학칙은 그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학교교육의 본질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원고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학의 자율성(헌법 제31조 제4항)을 사립대학의 학칙제정의 자율성으로 해석하고, 학칙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학교교육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한 구속력을 가진다는 전제하에, 사립대학은 종교교육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대법원이 인정한 판례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결을 하기 전에 1997년 2월 4일 제6회 비교법실무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하여 관련학자와 재판연구관의 전문적 검토를 거쳤다[4]. 세미나 토론과정에서 학위수여관계는 사법관계가 아닌 공법관계라는 입장, 교과과정으로 채플을 실시하는 것은 자유이나 채플과목을 학위와 연계시키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 예배현장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에 반한다는 입장, 과잉금지원칙과 비례원칙에 비추어볼 때 6학기 필수는 지나치다는 입장, 소극적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플교육방법의 대안을 제시하며 피고대학에 그러한 것이 있는 지 살펴보라는 형태로 심리미진이라 하여 파기환송하자는 주장 등 많은 논란이 있었다[5].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다. 미국 판례의 경우, 사립대학과 학생의 관계를 사법상의 계약관계로 보고 있으며, 대학의 학칙제정은 대학당국의 합리적 재량에 맡겨져 있어 학생에 대한 사교클럽이나 비밀단체 가입금지, 결혼금지 등 시민적 자유의 제한도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면 가능한 것으로 보고, 학칙에 의해 종교적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재학의 조건으로 삼는 것과

---

4) 이러한 세미나 내용은 사립대학 학칙의 법적 성격(이경운), 종교의 자유와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성낙인),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사립대학의 학칙제정 및 학생규율에 관한 권한(이성호), 기본권의 상충관계와 그 해결방안(고영한) 등이다. 비교법실무연구회 편, 판례실무연구(II), 박영사, 1998, pp. 1~116.

5) 상게서, "제6회 세미나 토론요지," pp.102~116.

채플에 매일 참석하도록 하는 것도 허용된다는 점이 판결에 많은 영향을 미친 듯하다.

Ⅲ. 제7차 교육과정과 종교교육 가능성

1. 제7차 교육과정 이전의 종교교육

종단학교가 설립이념을 살려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지만, 제4차 교육과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교교육을 실시할 뚜렷한 근거가 없는 상태였다[6]. 종단학교는 교육과정상에 종교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요구하였고, 이러한 요구에 근거하여 정부는 제4차 교육과정상에 종교교육 과목을 자유선택과목으로 포함시키기에 이르렀다[7]. 제4차 교육과정(1981년 12월 고시, 1984년부터 시행)에서 학교장 재량으로 0~8단위를 자유선택과목으로 고등학교에서 '종교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지만 입시교육 현장에서 선택과목을 선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내용을 어떻게 조직하여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교육과정도 없는 상태였다.

이때 교과목 명칭을 '종교교육'으로 정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일이었다. 종교에 따라 다른 경전이름을 교육과정상에 구체적으로 나열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교육부 입장에서는 과목 명칭을 구체적으로 '성경', '불경' 등으로 명시할 수 없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중립적인 교과목 명칭은 후에 교육과정도 일반적이고 중립적인 내용으로 결정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제5차 교육과정(1988년 3월 고시, 1990년 시행)에서 자유선택과목이라는 명칭이 교양선택과목으로 바뀌었고, 교과목 배당을 연간 2단위 이상으로 고정하였지만[8], 종교교육 과정은 마련되지 않아 각종단학교의 재량에 따라 무원칙적으로 이루어졌다.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종단별로 종교 교과서(종교<기독교>, 종교<불교>)가 만들어졌고, 종교담당 교사에 대한 자격연수가 실시되었다는 것이다.

제6차 교육과정(1992년 10월 고시, 1996년 3월 시행)에서 교양선택교과에 '환경과학'이 추가되었고, 연간 4단위로 높아졌으며, '종교' 교육과정이 처음으로 마련되었다. 이 종교 교육과정은 종단학교의 종교교육과 일반학교의 공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을 절충한 것이다. 교리교육과 신앙교육에 치중하는 종단학교의 종교교육이 야기하는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종교과목 외에 다른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였고, 교육내용도 마지막 특정종교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종교학적 관점에 입각하여 종교일반에 관한 이론과 세계의 다양한 종교를 폭넓게 접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9].

---

6) 원칙적으로 의무교육인 중학교의 종교교육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가리킨다.

7) 제4차 교육과정에서 자유선택과목을 만든 것은 기독교학교연맹 대표단의 로비에 의한 것이었다고 한다. 또한, 종교과목 외에 다른 선택과목을 동시에 개설하여 다른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점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다른 4개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윤이흠, "교과의 교육적 의미-신교육과정의 선택교과: 종교," 교육진흥, 제2권 제4호 (1990년 봄호), 중앙교육진흥연구소, 1990, p.145.

8) 교양 선택을 연간 2단위 이상을 학교장 재량으로 선택하여 지도하도록 하였지만, 종교를 부과할 때에는 학교장은 교육학, 논리학, 심리학, 철학, 생활 경제 등의 과목을 포함, 복수 과목을 설정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도록 하였다.

9) 유위준・정진홍・김윤성, 『종교』, 제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교양), 교육인적자원부, 2000, p.133.

2.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종교교육

제7차 교육과정(1997년 12월 고시, 고등학교는 2002년 시행)에서는 교양선택과목의 명칭이 교양과목으로 바뀌었고, 환경과학이 '생태와 환경'으로 바뀌었으며 '진로와 직업', '기타' 과목이 추가되어 9개 과목으로 늘어났다. 7차 교육과정에서 종교 과목은 고등학교 2, 3학년이 이수하는 일반선택과목에 포함되어 있다.

제7차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의하면, 일반 선택 과목은 학생들의 균형적인 이수를 위하여 ① 인문·사회 과목군(국어, 도덕, 사회), ② 과학·기술 과목군(수학, 과학, 기술·가정), ③ 예·체능 과목군(체육, 음악, 미술), ④ 외국어 과목군(외국어), ⑤ 교양 과목군 (한문, 교련, 교양)으로 구분하되, 모든 학생은 교양 과목군에서는 2개 과목 이상, ①~④ 과목군에서는 각각 1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10].

교양 선택 과목 중 학교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였다. 특히 평준화 지역의 학교는 학생의 의사에 관계없이 학교를 배정함에 따라 건학 이념 또는 설립 취지가 분명한 사립 학교의 경우에도 특정 종교 교육이 전교생에게 일률적으로 실시되지 않도록 각별히 배려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비평준화 지역이라 할지라도 학생 개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종교 이외의 과목을 복수로 제시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종교과목이 교양과목의 하나로 설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복수로만 개설할 수 있다면 국·공립학교에서도 종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다만 국·공립학교에서 종교과목을 개설할 경우에는 사립학교보다 더욱 일반적인 종교학적 내용을 다룰 수밖에 없을 것이다.

종교 과목이 정규 교과목인 선택과목에 포함되기는 했지만 당초 기독교계 학교들이 기대하였던 선교의 합법화·공식화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당초의 기대와 달리 종교 과목에서는 특정종교가 아닌 종교 일반에 대한 "종교학"적 내용을 가르치게 되었고, 종교 과목을 개설할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선택과목과 함께 복수로 개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필수과목이 아닌 선택과목으로 개설할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하면 종교 교과서는 총 8장[11]으로 구성되는데, 마지막 제8장의 '특정종교의 전통과 사상'을 제외하고는 종교학 일반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종단학교가 기대했던 종교교육과는 거리가 멀다. 종교학 과목을 가르치기 위해서 종단학교를 설립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요컨대 제7차 교육과정 하에서 기독교계 고등학교가 정규교과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선교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종교 교과서의 내용이 종교학 일반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교 교과목이 다른 선택 교과목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종교교육의 정규교과화, 공식화 요구가 오히려 종교교육을 종교학 교육으로 변질시키고, 비정규 전체교육을 정규의 소수교육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

10)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는 선택과목을 각각 28단위 이상 지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교양 과목군에서는 '한문', '교련'중에서 1과목(6단위)과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생활 경제', '종교', '생태와 환경', '진로와 직업' 중에서 1과목 (4단위), 계 2과목 10단위를 지정하는 것이다.

11) 8개 장의 내용은 인간과 종교, 종교 경험의 이해, 서로 다른 종교적 전통, 세계 종교와 문화, 인간과 자연에 대한 종교적 이해, 한국 종교와 문화, 종교 공동체, 특정 종교의 전통과 사상 등이다.

3. 특별활동에서의 종교교육 가능성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특별활동이 학급활동, 클럽활동, 학교활동의 3대 영역에서 이루어졌으나,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자치활동, 적응활동, 계발활동, 봉사활동, 행사활동의 5대 영역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특별활동은 "다양하고 건전한 집단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개성과 소질을 계발, 신장하고, 공동체 의식과 자율적인 태도를 기름으로써 민주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함양한다"는 총괄목표 하에 영역별 하위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제7차 특별활동 교육과정의 영역 및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차 특별활동 교육과정은 초·중등학교 공통이다. 특별활동 영역과 활동내용을 보면 종교교육이 정규활동으로 들어갈 여지는 없어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활동과정에서 종교적인 요소를 가미할 수는 있다고 판단된다. 예컨대 적응활동 중 상담활동, 계발활동 중 청소년단체활동, 봉사활동 중 자선구호활동 등을 종교교육과 연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표 1> 제7차 특별활동 교육과정의 영역과 활동내용

영 역	활 동		
자치활동	o 협의 활동	o 역할 분담 활동	o 민주 시민 활동
적응활동	o 기본 생활 습관 형성 활동 o 진로 활동	o 친교 활동 o 정체성 확립 활동	o 상담 활동
계발활동	o 학술 문예 활동 o 여가 문화 활동	o 보건 체육 활동 o 정보 통신 활동	o 실습 노작 활동 o 청소년 단체 활동
봉사활동	o 일손 돕기 활동 o 자선 구호 활동	o 위문 활동 o 환경·시설 보전 활동	o 캠페인 활동
행사활동	o 의식 행사 활동 o 수련 활동	o 학예 행사 활동 o 안전 구호 활동	o 보건 체육행사 활동 o 교류 활동

교육인적자원부 사이버소리함의 '질문과 답하기' 사이트에 제시된 종교교육 관련 질문을 분석해보면 교육부는 클럽활동(CA) 시간은 정규교과시간이므로 기독 학생반, 불교 학생반 등을 개설할 수 없다는 입장인 듯하다. 다음은 어느 두 교사의 질문과 그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의 답변 내용이다.

<질문 1> "사립학교는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과목 개설·운영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종교과목 외의 다른 과목을 개설하여 선택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신 답변은 이해하였습니다. 특정 종교를 갖지 아니 한 학교에서 건학이념과 관계없이 특정 교사가 특정 종교활동을 정규 수업 시간인 CA 시간에 하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 경우, 관리자는 이를 허용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금지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1> "선생님의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립학교는 건학이념이나 설립취지에 따라 교과시간에 종교과목을 개설·운영할 수 있으나, 학교에서 특정 종교과목을 개설·운영하지 않을 때 특정교사가 CA시간에 특정 종교 활동과 관련된 교육을 할 수 있을지 여부는 학교법인이나 학교장의 학교설립 운영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2> "6차 교육과정이나 7차 교육과정에는 특별활동교과에 4단위가 할당되어 있고, 각 학교에서는 4단위 중 2단위는 소위 HR 시간에 그리고 2단위는 CA 시간에 할당하여 주당 1시간씩 운영하는 것이 보통이고, CA 시간은 각 교사들의 특기나 특별한 관심과 관련된 활동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교사의 특정 종교활동을 정규 수업 시간인 CA 시간에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불교 학생반을 CA 시간에 편성할 수 있는지? 1) 국·공립학교인 경우? 2) 특정 종교가 없는 사립학교의 경우는? 3)특정 종교학교인 경우는 또 어떠한지? 물론 정

규 수업시간 이후에 이루어지는 서클 활동의 경우는 괜찮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해석도 함께 내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2> "선생님이 주신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CA는 정규교육과정이므로 CA시간에 국·공립학교에서는 어떤 형태로도 특정 종교 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립학교는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과목 개설·운영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종교과목 외의 다른 과목을 개설하여 선택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답변요지는 국·공립학교에서는 종교교육이 불가능하나 사립학교는 다른 과목과 복수로 개설될 경우 종교과목을 개설하여 종교교육을 할 수 있으며, 클럽 활동 시간도 정규교과 시간이므로 국·공립학교에서는 종교관련반을 개설할 수 없다는 것이다. 수업시간 이후에 이루어지는 서클 활동에 대하여는 답변을 하고 있지 않은데 그것까지 금지할 명분은 없기 때문에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국·공립학교에서는 종교색을 띤 클럽활동반도 개설할 수 없는 것인가? 연구자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본다. 학교는 학생의 소질과 능력, 취미, 기호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능한 한 다양한 클럽을 제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충분한 선택의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 다른 클럽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가 열려 있고, 종교반에 강제로 배정하지 않는 한, 그리고 특정 종교반의 개설을 금지하지 않는 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성 보장 차원에서 종교반은 얼마든지 개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종교반을 개설한 국·공립학교는 많이 있다고 한다. 클럽 명칭을 종교를 직접적으로 나타내지 않는 방법으로 종교반을 개설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관리자에 따라 단위학교의 상황은 많은 차이가 있는 듯하다. 선교단체나 관련 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클럽 활동을 통한 선교 가능성을 분명히 하기 위한 노력(유권해석 요구, 소송 등)을 통해 비기독교도 관리자로 인하여 클럽 종교활동이 제한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중학교 과정에서는 고등학교보다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데 제약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며, 교육과정상 종교과목도 설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7차 교육과정의 재량활동을 활용하면 종교교육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열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교육인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중학교과정에서 재량 활동시간에 종교교육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 내용이다.

"제7차 교육과정 편제와 시간배당 기준에 따르면 고등학교는 교양일반 선택과목으로 '종교' 과목이 있습니다. 중학교에는 종교 관련 교과가 없으므로, 시·도 지침에 따라 교과목 개설 절차를 밟아 교과 재량 활동의 선택 과목 중 기타 과목으로 종교과목을 개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종교를 선택과목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때 유의할 규정과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헌법 제31조 ④항에서 교육의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교육기본법 제6조 ②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 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교육 과정에는 '학교가 종교 과목을 부과할 때에는 종교 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규정의 취지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학생의 학교 선택권 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특정 종교에 대한 종파교육이 아닌 종교 일반에 대한 교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는 정규시간 외에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창의적 재량활동에서의 종교교육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자기주도적 학습 등이 강조되므로 종교과목 같은 교과의 이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종교적 차원의 인간교육과 같은 주제 탐구 활동 형식의 교육은 가능할 것입니다. 역시 교과 재량 활동에 적용되었던 논리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Ⅳ. 학급경영을 통한 선교 가능성

학급은 학교교육조직의 기본단위로서, 학생의 학교생활의 장이며,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장이다. 학급경영 방식에 따라 학생의 학업성취와 인격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학급 담임교사는 학생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존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담임교사는 직접적인 행동적 모범을 통해서, 그리고 학급 경영활동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담임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학급 경영활동을 통해 직접적인 선교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정규교과시간을 통한 종교교육보다 담임교사의 종교적인 학급운영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전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훈화나 선교, 기도 등은 학생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 인용문은 교사가 학급 내에서 선교하는 행위를 비난하는 법보신문과 현대불교신문의 기사내용이다[12].

> "경기도 고양시 일산 초등학교 1학년 4반 학급담임 인○○ 교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일 아침 하나님에 대한 감사기도를 강요하였고, 학교 행사 때에는 학부모들에게까지 기도하는 것을 강요하여 말썽이 되었다. 불교계의 항의에 따라 고양시 교육청은 교장과 인 교사에게 징계를 내렸고,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서 전국의 학교에서 특정종교에 대한 전교행위를 절대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법보신문 1996년 10월 24일자>

> "-'선생님이 교실에서 선교행위'- 경기도 포천군 송우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가 담당학급 어린이를 상대로 교회 출석을 강요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찬송가를 부르게 하였다. 교회를 가지 않는 학생들에게 청소를 시키고 체벌을 가했다."<현대불교신문 1996년 3월 27일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교사를 통한 종교적 감화가 가장 영향력이 있다는 데 기독교사들의 고민이 있다. 위 두 사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학급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종교활동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선교활동, 즉 정상적인 상담활동을 통한 선교의 경우에는 문제가 될 소지가 아주 적다는 것이다.

한편, 위의 두 가지 사례보다 훨씬 노골적으로 선교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그 담임교사의 학급경영 능력과 방법, 학생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다른 교사들에 비해 탁월하여 불법적인(?) 종교활동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문제시하지 않는 경우이다. 기독교사 연찬모임 등에서 발표되는 선교사례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성공적이었다고 하여 모든 상황에서 그러한 선교방법이 효과적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섣불리 따라 할 일은 아니다.

어쨌든 학급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제식 선교행위는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학생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개인적인 만남을 통한 선교가 아닌 한 학급경영활동을 통한 선교는 문제가 될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Ⅴ. 공교육기관에서의 신우회 모임

---

12) 김형중, "한국의 초·중등학교에서의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3권, 1997.9, p.120에서 재인용.

교직원 선교의 중요한 역할은 신우회가 담당하는 것이 보통이다. 신우회는 말 그대로 교직원 친목모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신우회 연합모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국교육자선교회에 의하면, 50% 이상의 학교가 신우회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신우회가 교직원 선교와 학생 선교전략 수립 및 공유에 있어서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신우회를 조직하여 운영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가장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일과시간 중에 신우회 모임이 가능한가에 관한 것이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근무시간)에 의하면,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교육공무원은 17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되어 있으며,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3시로 되어 있다.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이며,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않도록 되어 있다.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포함)은 담당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성실의 의무가 있으며, 기관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따라서 일과시간 중에 종교활동인 신우회 모임을 갖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학교를 제외한 일반 관공서에서는 신우회 모임을 일과시간 전이나 일과시간 후, 또는 점심시간에 갖는 것이 보통이다.

교원들의 경우 신우회 모임을 일과시간 전이나 점심시간에 갖는 경우보다는 일과시간중이나 일과시간 후에 갖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한다. 학교는 다른 직장과 달리 일과시간을 일찍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교실을 비우기가 어렵기 때문이다.[13] 또한 일과시간 후보다는 일과시간 중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학교의 경우에는 가사를 병행하는 여교원 비율이 높아 퇴근시간이 늦어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우회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일과시간 중에 모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신우회를 언제 모이는 것이 좋으냐의 문제는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현실의 문제이다. 다른 직장인과 달리 교사들은 점심시간을 활용하기 어렵고, 일과시간 전을 활용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면 일과가 끝난 후 퇴근시간 전까지의 시간을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 신우회 모임 시간이 문제가 될 경우 이러한 점을 관리자에게 납득시킬 필요가 있다. 관리자가 납득하지 못한다면 현실적으로 강행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법적인 문제를 들고나올 경우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나와 있는 점심시간 1시간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덕을 세우는 데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활동들은 법적인 판단보다는 상식적인 판단에 의해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 신우회 구성원 하나 하나가 학교현장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느냐 하는 것이 일과시간 중에 융통성 있는 활동의 가능성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평소에 비기독교인보다 먼저 희생하며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줄 수 있다면 신우회 모임으로 인하여 법적 정당성을 따지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을 것이다. 정규교육과정이나 특별활동, 학급경영 등을 통한 종교교육은 상대가 다수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법적인 객관적 판단이 중요하다. 그러나 신우회 모임은 단위학교

13) 중등학교의 경우에도 다른 직장처럼 점심시간 1시간을 휴식하기보다는 학생상담, 교실 순시 등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다.

조직내에서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내부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다른 하나는 신우회가 학교시설, 즉 교실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종교활동을 위하여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합법적인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없었다. 미국에서는 복음주의 교회가 국공립학교에서 가족의 가치 및 아동양육에 관한 영화를 상영하는 것이 국교설립금지조항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14] 영화를 수업시간 중에 상영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가 영화상영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며, 영화는 교회만이 아니라 공중에게 개방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교설립금지조항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01년 6월 11일, LA Times는 미국 연방 대법원이 공립학교에서 방과후 성경공부(Bilble Study)를 개최할 수 있도록 허락되어야 한다는 청년 기독교 그룹(Christian Youth Group)의 주장을 종교 및 언론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신장으로 보고 받아들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동안 원칙적으로 교육위원회는 학교시설 활용에 제한을 두어 왔으며, 동 판결의 대상이 된 Milford Central School의 경우도 종교 목적의 학교시설 활용을 금지하는 원칙을 지켜왔으나, 정부는 종교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청년 기독교 그룹을 차별화할 수 없으며, 따라서, 성경공부 그룹도 다른 시민 단체와 마찬가지로 자유 언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연방 대법원이 이를 위헌적인 것으로 판결(찬성 6, 반대 3)했다는 것이다.[15]

이러한 미국 판례를 참고해 볼 때, 국민의 재산인 학교시설을 종교활동에 이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신우회 모임을 갖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Ⅵ. 결어

공교육기관에서 종교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의 문제를 주로 법규적인 측면에서 분석해보았다.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초·중등학교보다 많은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학칙의 규정에 따라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법적으로 문제시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을 제시하였으며, 초·중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선택권이 제한적이거나 억제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적인 종교교육에 어려움이 있음을 밝혔다.

특히 학생의 교육과정 선택권이 확대 부여되는 제7차 교육과정 하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통한 종교교육은 보다 어려워졌다는 점과 클럽 활동이나 학급 경영활동을 통한 종교교육 가능성도 열려 있지 않다는 점을 밝혔다. 다만, 클럽 활동을 통한 종교교육은 가능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교육당국의 유권해석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학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개인적 만남을 통한 선교 가능성은 열려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일과시간중 신우회 활동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나 교원들의 근무시간의 특수성을 들어 요구할 여지는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으며, 학교시설물을 종교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도 실제 학교 현장에서 종교교육이나 선교활동이 문제가 될 경우 개인적 차원에서 법논리를 내세워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하여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관리자나 불신자와의 관계가 악화될 경우 선교의 성공 가능성도 낮

14) 손희권, "국교설립금지조항에 비추어본 미국교육에서의 정치와 종교," 교육정치학연구, 제5권 제2호, 1997.12, pp.161～162.

15)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협력담당관실, "주간 해외교육정보,"(www.moe.go.kr) 2001년 6월 25일자

아지기 때문이다. 선교의 성공여부는 일차적으로 옳고 그름 이전에 원만한 인간관계를 통하여 얼마나 감정을 사로잡을 수 있는가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적 차원의 법논리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교원선교단체나 교단 차원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여 공교육기관에서의 종교활동의 영역을 넓혀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교육현장의 구체적인 종교교육 문제 사례를 수집하여 관계당국에 유권해석을 요구하거나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공식적으로 종교활동의 한계가 구획지어질 수 있다면, 관리자에 따라 신·불신에 따라 종교교육이 좌우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강인수, 교육법연구, 서울: 문음사, 1989.

고영한, “기본권의 상충관계와 그 해결방안,” 비교법실무연구회 편, 판례실무연구(Ⅱ), 박영사, 1998, pp.84~101.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협력담당관실, “주간 해외교육정보,”(www.moe.go.kr) 2001년 6월 25일자

김귀성, “한국의 중등학교에 있어서 종교교육의 현황과 과제,” 종교교육학연구, 제3권, 1997.9, pp.129~147.

김태진, “종교의 자유와 그 제한에 관한 연구,”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1983.

김형중, “한국의 초·중등학교에서의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3권, 1997.9, pp.111~127.

대법원 판례, 1998.11.10, 96 다 37268 판결 ‘학위수여이행’ 공98.12.15.[72], 2830

비교법실무연구회 편, 판례실무연구(Ⅱ), 박영사, 1998.

성낙인, “종교의 자유와 학교에서의 종교교육,”비교법실무연구회 편, 판례실무연구(Ⅱ), 박영사, 1998, pp.30~53.

손희권, “국교설립금지조항에 비추어본 미국교육에서의 정치와 종교,” 교육정치학연구, 제5권 제2호, 1997.12, pp.161~162.

손희권, “한국 학교교육에서의 종교의 자유,” 교육법학연구, 제10호, 1998.10, pp.83~104.

안기성 외, 역(George Johnson), 미국 교육법제, 서울: 청암미디어, 1999.

유위준·정진홍·김윤성, “종교,” 제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교양), 교육인적자원부, 2000, p.133.

윤이흠, “교과의 교육적 의미-신교육과정의 선택교과: 종교,” 교육진흥, 제2권 제4호(1990년 봄호), 중앙교육진흥연구소, 1990, p.145.

윤정일 외, 교육행정학원론, 서울: 학지사, 1998.

이경운, “사립대학 학칙의 법적 성격,” 비교법실무연구회 편, 판례실무연구(Ⅱ), 박영사, 1998, pp.3~29.

이성호,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사립대학의 학칙제정 및 학생규율에 관한 권한,” 비교법실무연구회 편, 판례실무연구(Ⅱ), 박영사, 1998, pp.54~83.

헌법재판소 판례, 94 헌마 277 ‘신입생지원자격 제한조치’ 헌재공보 제21호(1997.3.27)

1) 미국에서는 공립학교 교육을 공교육으로, 사립학교 교육을 사교육으로 규정하나, 우리의 경우에는 공립이건 사립이건 정규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공교육으로, 개인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학원 수강, 개인과외 등을 사교육으로 규정해 왔다. 이러한 구분이 국제표준에 맞지 않아 교육지표를 국제비교할 때 혼란스럽다고 하여 미국 방식으로 바꾸자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아직도 사립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까지 공교육 속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글에서도 정규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모두 공교육으로 규정하고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2) 94헌마277 신입생지원자격 제한조치 헌재공보 제21호(1997.3.27)

3) 1998.11.10, 96다37268 판결 학위수여이행 공98.12.15.[72], 2830

4) 이러한 세미나 내용은 사립대학 학칙의 법적 성격(이경운), 종교의 자유와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성낙인),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사립대학의 학칙제정 및 학생규율에 관한 권한(이성호), 기본권의 상충관계와 그 해결방안(고영한) 등이다. 비교법실무연구회 편, 판례실무연구(Ⅱ), 박영사, 1998, pp.1~116.

5) 상게서, "제6회 세미나 토론요지," pp.102~116.

6) 원칙적으로 의무교육인 중학교의 종교교육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가리킨다.

7) 제4차 교육과정에서 자유선택과목을 만든 것은 기독교학교연맹 대표단의 로비에 의한 것이었다고 한다. 또한, 종교과목 외에 다른 선택과목을 동시에 개설하여 다른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야 한다는 점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다른 4개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윤이흠, "교과의 교육적 의미-신교육과정의 선택교과: 종교," 교육진흥, 제2권 제4호(1990년 봄호), 중앙교육진흥연구소, 1990, p.145.

8) 교양 선택을 연간 2단위 이상을 학교장 재량으로 선택하여 지도하도록 하였지만, 종교를 부과할 때에는 학교장은 교육학, 논리학, 심리학, 철학, 생활 경제 등의 과목을 포함, 복수 과목을 설정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도록 하였다.

9) 유위준·정진홍·김윤성, 『종교』, 제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교양), 교육인적자원부, 2000, p.133.

10)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는 선택과목을 각각 28단위 이상 지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교양 과목군에서는 '한문', '교련'중에서 1과목(6단위)과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생활 경제', '종교', '생태와 환경', '진로와 직업' 중에서 1과목 (4단위), 계 2과목 10단위를 지정하는 것이다.

11) 8개 장의 내용은 인간과 종교, 종교 경험의 이해, 서로 다른 종교적 전통, 세계 종교와 문화, 인간과 자연에 대한 종교적 이해, 한국 종교와 문화, 종교 공동체, 특정 종교의 전통과 사상 등이다.

12) 김형중, "한국의 초·중등학교에서의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3권, 1997.9, p.120에서 재인용.

13) 중등학교의 경우에도 다른 직장처럼 점심시간 1시간을 휴식하기보다는 학생상담, 교실 순시 등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다.

14) 손희권, "국교설립금지조항에 비추어본 미국교육에서의 정치와 종교," 교육정치학연구, 제5권 제2호, 1997.12, pp.161~162.

15)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협력담당관실, "주간 해외교육정보,"(www.moe.go.kr) 2001년 6월 25일자